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검 토 보 고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18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양부남의원 등 28인
2. 발 의 일: 2024. 6. 12.
3. 회 부 일: 2024. 6. 14.

II. 제안이유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사문화시켜 수사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유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이 형법에 반하는 피의사실공표의 예외규정을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왔기 때문임.

그러나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형법상 규정은 없음.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하위법령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195조제2항에서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해당 대통령령 제5조제3항은 「형사소송법」이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실체적 사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재위임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령에 수사에 관한 준칙을 정하도록 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법」이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 등은 모두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임.

이러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이 법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피의사실 공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조제1항제6호(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와 같은 사유를 전면 배제하는 등 기존 각 수사기관의 공보 관련 준칙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였음.

마지막으로 「형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행정규칙 제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을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피의사실공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가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였음.

Ⅲ. 주요내용

가.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을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금지하고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안 제4조).
- 라.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범죄,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등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마.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하위 수사기관 별로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형사사건의 공개는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하거나 포토라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아.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및 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직근 상급기관은 직무감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업무배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

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수사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피의사실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 요건 또는 공개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안 제15조).

IV. 검토의견

1. 피의사실공표죄 개요

가. 의의 및 연혁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¹⁾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정 전 정부의 형법 초안에는 없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제정형법 논의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신설하고자 의견이 모아졌고,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²⁾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수사권 및 피의자의 개인적 명예와 인권임.³⁾

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3면(엄상섭의원발언) 등

3) 주석형법 제5판(각칙 I),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312면(이상주).

참고로,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폐지 및 위법성조각사유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은 물론 국가의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되었음.⁴⁾⁵⁾

나. 처벌 현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이래로 단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2019. 5. 27.)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총 347건 중 기소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불기소 사유 중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일정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도 없었음.⁶⁾

4) 한위수, 「공익적 공표 허용하되 증거확인·절차·표현에 주의」, 신문과 방송(2009. 8.) 참조.

5) 1992년 형법개정안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단서조항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포함된 바 있음.

6) < 2008~2018년 피의사실공표죄 처분현황 >

(단위 : 건)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타관 송치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각하	
2018	18	18	-	18	8			1	0	9	0
2017	41	33		29	11			2	2	14	4
2016	38	21		16	5		2			9	5
2015	32	28		27	6		8		1	12	1
2014	43	25		16	7		1			8	9
2013	27	11		11	1		3	2	1	4	
2012	23	22		22	12		1			9	
2011	38	37		32	14		4			13	5
2010	40	37		35	15		3	1		13	2
2009	46	42		39	8		12	1		18	3
2008	8	8		6	4					2	2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2019. 9.), 32면에서 참조.

다. 피의사실공표 관련 규정

「형법」 제126조가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피의자의 사생활·명예·신용 보호 노력 의무,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형사사건 공개 관련 준칙 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⁷⁾⁸⁾ 또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부훈령”), 경찰청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경찰청훈령”), 해양경찰청훈령인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해양경찰청훈령”)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이하 “공수처훈령”)은 피의사실공표의 예외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⁹⁾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8) 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법무부훈령, 경찰청훈령, 해양경찰청훈령 등이 마련되어 있음. 다만, 경찰청훈령과 해양경찰청훈령은 각각 제1조 목적 규정에서 각 훈령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법무부훈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지 아니함.

9) 참고로, 법무부 훈령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전에 예외적으로 공보를 허용하는 근거로 활용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령으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이 여전함.

＜ 피의사실공표 관련 규정 ＞

	주요 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대통령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제1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음(제3항)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법무부훈령)	-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제5조) - 다만, ① 오보에 대해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⑤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 등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 ⑥ 중요사건으로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제9조).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훈령)	-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제4조). - 다만, 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에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오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제5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공수처훈령)	-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준칙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제4조). - 다만, ① 오보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범인 검거 등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공보를 시행할 수 있음(제8조)

라. 판례의 태도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형사판례가 없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인 민사판례만 있음.

대법원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언론보도를 이유로 국가 또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위법성 조각 여지를 인정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존중을 감안하여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음.¹⁰⁾

마. 외국의 경우¹¹⁾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없음.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무부 차원의 매뉴얼을 통하여 공표 내지 공개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통해 처벌될 행위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재판상 비공개심리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와는 무관함.

10) 대법원 1999.1.26. 97다10215,10222; 2002.9.24., 2001다49692판결. 이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기준으로 ①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일 것, ②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발표에 한정할 것, ③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할 것, ④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할 것을 제시하였고,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방법, 공표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또한, 언론기관이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는 ①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② 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③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음.

11)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2019.9), 41~70면 참조.

2.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기본체계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 (1) 제정안의 취지는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과 예외적 공개의 요건 등을 정하고, 그 위반 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등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피의사실공표죄는 처벌 측면에서는 단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훈령과 경찰청훈령 등이 그 형식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규율을 위한 준칙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훈령에서 법령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¹²⁾ 따라서, 해당 훈령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피의사실공표의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범력을 제고시키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12)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2019.9), 113~114면.

나. 제정안의 기본체계

- (1) 제정안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됨. 제1장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같은 총칙적 사항을, 제2장은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과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방식 및 절차 등을, 제3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 및 초상권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 공개 사유 이외에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담당자 등에 대한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이 법을 위반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현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	제4조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제5조	공소제기 전 공개 금지	
		제6조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제2절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제7조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8조	전문공보관
			제9조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제10조	예외적 구두 공개
제3장 초상권 보호		제11조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	
		제12조	초상권 보호조치	
제4장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		제13조	직무감찰	
		제14조	수사의뢰	
제5장 벌칙		제15조	벌칙	

(2)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형사사건의 공개금지원칙과 예외적 공개
이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		○ 기본원칙(§4): 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등의 공표, 유포, 누설 금지 - 공소제기 전(§5): 일체 공개금지(불기소처분 포함) - 공소제기 후(§6): 제한적 공개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7) -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5)에도 불구하고, ① 오보에 대해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최소한의 범위에서 반박할 수 있는 혐의사실 등), ②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사건관계인 성명, 범죄피해·위협 내용, 대응조치 내용 등),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사건관계인 성명, 범죄피해·위협 내용, 대응조치 내용 등), ④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사건관계인 성명·얼굴, 검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 혐의사실 등) 공개 가능
	방식 및 절차	○ 전문공보관 지정(§8) - 대검·고검·지검: 부장검사 이상/경찰청·시도경찰청: 4급 이상/공수처: 수사처검사 이상 - 형사사건의 공개는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가능 - 전문공보관은 수사, 공소유지 관여 금지 ○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9) 및 예외적 구두 공개(§10)
초상권 보호		○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11) - 수사업무 종사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일시, 귀가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 공개 금지 ○ 초상권 보호조치(§12) - 수사기관의 장: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내 촬영, 포토라인 설치 등 제한 가능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		○ 직무감찰(§13): 수사업무 종사자의 이 법 위반 피의사실등 공표 시, 전문공보관의 공개 요건·범위를 위반한 피의사실등 공개 시 직근 상급기관(없는 경우 내부감찰)이 실시 → 업무 배제 ○ 수사의뢰(§14): 직무감찰 통해 위법 확인 시 직무감찰 실시 기관의 장이 의뢰
벌칙		○ 피의사실등 공표 등(§15①):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4조* 위반하여 피의사실등 공표·유포·누설 → 5년↓징역 또는 5년↓ 자격정지 * 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등의 공표·유포·누설 금지 ○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15②):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11조*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일시, 귀가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을 공표·유포·누설 → 1년↓징역 또는 3년↓ 자격정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일시, 귀가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 공개 금지 ○ 공개 요건·범위 위반(§15③): 전문공보관이 제7조의 공개 요건·범위 위반하여 피의사실등 공개 → 5년↓징역 또는 5년↓ 자격정지

(3)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의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① 「형법」에 피의사실공표 및 위법성조각사유, 절차 등을 모두 규정하는 방안¹³⁾ ② 「형법」에 피의사실공표 처벌 규정을 두고, 그 위법성조각사유 및 절차는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¹⁴⁾ 등이 논의되어 왔음.

(4) 제정안은 위 두 가지 방안과는 달리, 기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둔 채, 이와 별개로 피의사실공표를 구성하는 내용·원칙과 절차 그리고 그 위반 시의 처벌까지 정하는 독립적·병립적인 법을 마련하는 입법방식인바, 구체적으로는 법무훈령의 내용과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등에 관한 새로운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여짐.

그런데, 법무부훈령의 성격은 형사처벌의 내용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형사사건의 공보(公報)에 관한 수사기관 내부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훈령이 규정하는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제정안이 규정한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그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기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거

13) 19대 국회에서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형법」 제126조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①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2940호 / ②임내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809호 / ③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16886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바 있음.

14)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974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바 있음.

의 같은 내용의 처벌을 도입하면서도 「형법」 제126조 또한 병립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비록 안 제3조제1항에서 현행 「형법」 제126조와의 관계를 언급하기는 하나, 이러한 입법체계는 향후 「형법」 제126조와의 관계에서 적용 등에서의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형사특별법이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의 가중처벌이나 처벌 특례 등을 정하는 것이 입법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¹⁵⁾ 제정안도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 (1) 안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건관계인”, “수사기관”, “수사업무 종사자”, “피의사실등” 및 “형사사건”에 관해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그 밖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3. “수사업무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피의사실등”이란 사건관계인의 성명, 인적사항, 얼굴, 사생활, 혐의사실과 수사관련 증거서류, 증거물 등 일체의 사건관련 자료를 말한다. 5. “형사사건”이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 (2) 제정안 제2조의 정의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먼저, 제정안은 “사건관계인”을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달리 공소제기 후의 공개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안 제6조 등) ‘피고인’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무부훈령은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사건관계인으로 “약칭”¹⁶⁾하고 있고, 경찰청훈령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사건관계인으로 “정의”¹⁷⁾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나) 다음으로, 제정안은 “수사기관”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그 밖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이는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무부훈령은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를, 경찰청훈령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각각 수사업무 종사자로 약칭하고 있음.¹⁸⁾

16) **법무부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경찰청훈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사건등”이란 경찰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사건을 말한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3. “공보책임자”란 언론에 대해 수사사건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법무부훈령**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제정안은 “**피의사실등**”을 사건관계인의 성명, 인적 사항, 얼굴, 사생활, 혐의사실과 수사관련 증거서류, 증거물 등 일체의 사건관련 자료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로서 구체적으로 고소장·고발장·범죄인지서, 체포·구속영장 등에 기재된 범죄사실¹⁹⁾을 의미하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객체인 피의사실에서 그 범위를 다소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 끝으로, 제정안은 “**형사사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벌칙 조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기존 형사사건의 공보(公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형식이어서 공보의 대상인 ‘형사사건’에 대한 정의 역시 필요하기 때문임.

이러한 정의는 대체적으로 법무부훈령을 참고²⁰⁾한 것으로 보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경찰청훈령 제5조(예외적인 공개)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피의사실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고 한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9) 주석형법 제5판(각칙 I),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315면(이상주).

20) **법무부훈령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임. 다만, 법무부훈령이 해당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피의사실공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공보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인 데 비하여, 제정안은 이를 넘어 피의사실공포에 관한 형사처벌까지 규율함으로써 이러한 정의 규정이 일종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됨. 따라서, 규정 목적이 서로 다른 조항을 제정안에서 그대로 차용할 경우 「형법」 제126조와의 관계 등에서 혼선이 초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 (1) 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나,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과의 관계까지 다루고 있는 특색이 있음.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위반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은 그 효력이 없다.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2) 제정안 제3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먼저, 안 제3조제1항은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제정안이 피의사실공표의 처벌과 관련하여 현행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유사한 벌칙 규정을 신설(안 제15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과 「형법」 제126조 간 관계에서 적용순서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발의되었던 법률안들은 주로 「형법」이나 특별법에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함. 그에 반하여 제정안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향후 피의사실공표가 문제될 경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 제정안의 처벌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고 처벌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결정함에 있어 형법 총칙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다음으로, 안 제3조제2항은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²¹⁾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

21) 이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제정되어 2024. 1. 25.부터 시행되었음.

고 있음. 동 규정은 제도 특성상 피의사실 등의 공표를 수반하게 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공개와 이 법의 관계를 밝히는 주의적 규정으로 보임.

(다) 한편, 안 제3조제3항은 “이 법을 위반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함. 이는 제정안이 법률로써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이나 수사기관의 훈령 등에서 법률과 어긋나는 내용을 규정할 경우 무효임을 선언하는 조항으로 이해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재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행정규칙인 법무부 훈령, 경찰청훈령 등은 형사사건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통령령이나 훈령이 법적 근거 없이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법무부훈령은 “중요사건으로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막연한 재량규정으로 피의사실공표금지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시킬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취지가 인정됨.

그러나, 안 제3조제3항의 내용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력한 무효선언조항으로서 이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행정입법 또는 행정

규칙 등이 제정안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인지, 또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삼권분립 원칙 등의 측면에서도 행정입법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등²²⁾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3조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현행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금지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피의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제정안이 실제로 입법된다면 이와 어긋나는 행정입법 등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2)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1) 안 제2장제1절(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안 제4조), 공소제기 전 공개 금지(안 제5조),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안 제6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체계와 내용은 대체로 법무부훈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²³⁾

제 정 안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 제4조(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표, 유포, 누설은 피의사실등에 관한 일체의 사건관련 자료 또는 그 내용을 말 또는 글 등으로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제8조의 전문공보관 이외의 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 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피의사실등의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관련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사건관련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못한다.

23) 법무부훈령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2) 제정안 제2장제1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먼저,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표, 유포, 누설은 피의사실등에 관한 일체의 사건관련 자료 또는 그 내용을 말 또는 글 등으로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제8조의 전문공보관 이외의 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여 제1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표·유포·누설’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가장 핵심인 원칙을 밝히며, 벌칙 규정인 **안 제15조제1항²⁴⁾**의 전제가 되는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임.

다만,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인 피의사실의 ‘공표’ 외에 ‘유포’ 및 ‘누설’을 추가하고 있으나,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의 ‘공표’가 비교적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의사실공표죄에서의 ‘공표’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서, 공연히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특정한 1인(예를 들어 신문기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는 공표에 해당함.²⁵⁾ 한편, 개정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2.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24) **제정안 제15조(벌칙)** ①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피의사실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하 생략)

25) 주석형법 제5판(각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313면(이상주).

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유포’와 ‘누설’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하여, ‘유포’란 세상에 널리 퍼뜨림²⁶⁾을 의미하고, ‘누설’이란 비밀이 새어 나가게 함²⁷⁾을 의미함. 유포와 누설이 구성요건적 행위로 추가될 경우 처벌 범위가 다소 넓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두 개념 모두 피의사실공표죄의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있는 1인 포함)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는 ‘공표’의 의미에 충분히 포섭될 여지가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4조에서는 형사사건의 ‘공개’라는 용어에 더하여 피의사실등의 ‘공표, 유포, 누설’이라는 용어를 별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양자 간의 명확한 차이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안 제4조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명확성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⁸⁾

(나)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피의사실등의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26) 「형법」에서는 ‘유포’가 신용훼손죄에 관한 제313조에서 한 번 사용되는데, 이때 유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의미함[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2017년), 207면].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형법」 제127조의 공무원 비밀누설죄에서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주석형법 제5판(각칙 I),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331면(이상주)].

「형법」 제127조(공무원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8) 제정안 제4조가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훈령 제4조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공개’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음.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중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내사종결의 중국처분을 한 사건이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포함됨을 부연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다) 한편, **안 제6조**는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관련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사건관련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못한다”고 있음.

원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 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데,²⁹⁾ 법무부훈령에서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있어 이러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보다 내부적인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공보를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6조는 이러한 법무부훈령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9) 주석형법 제5판(각칙 I),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316면(이상주).

다만, 법무부훈령이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인 데 반하여, 제정안 제6조의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안 제15조제1항)에 의해 처벌받는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³⁰⁾의 공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비공개범위가 적정·명확한지 등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30)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안 제7조)

(1) 안 제2장제2절(제7조)에서는 공소제기 전 예외적 요건 및 범위라는 제목 하에, 공소제기 전에 공개할 수 있는 네 가지 예외 사유와 그 각각의 사유와 관련하여 공개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체계와 내용은 대체로 법무부훈령의 관련 규정에서 참고하되 법무부훈령보다 그 범위를 다소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법무부훈령
제2절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제7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검찰청의 지청 및 경찰서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서면요청이 있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6. 수사에 착수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 정 안	법무부훈령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해당 보도 또는 취재요청의 내용에 비추어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오보의 내용에 한정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혐의사실, 수사경위, 수사상황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가 본인의 성명 공개에 동의한 경우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성명.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문 알파벳의 순서대로 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보 및 처분일시, 처분주문, 불기소이유 요지, 내사종결 요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성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 라. 혐의사실, 범행수법, 수사경위, 수사상황, 증거서류 및 증거물(다목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혐의사실, 범행수법, 수사경위, 수사상황, 증거서류, 증거물 및 지명수배 사실(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제 정 안	법무부훈령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나. 죄명 다. 사건개요 ⑤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함),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음),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기관 또는 기업 나. 죄명 다. 수사의뢰(이첩·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고발인 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 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기업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출국금지 :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2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5.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죄명 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6. 체포·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 체포·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7.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

(2) 제정안 제2장제2절(제7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먼저, 안 제7조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로서, ① 실제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오보에 대해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제1호), 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제2호),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④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제4호)의 네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체로 법무부훈령의 사유들과 유사하며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무부훈령은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가능 사유로서, “수사에 착수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³¹⁾ 또는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³²⁾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

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구성·가입·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생략)

32)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제9조제1항제6호), 여기에는 내란·외환, 테러, 선거범죄, 국회의원의 범죄, 대형참사, 범죄단체 관련 사건 등 일반적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하여, 제정안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법무부훈령에 따를 경우 피의사실 불공개 원칙 규정이 무력화 내지 형해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서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 보장을 더욱 중시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나) 다음으로,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취재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판단의 주체가 수사기관 소속(후술할 안 제8조의 전문공보관)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며, 전문공보관은 안 제8조제3항³³⁾에 따라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임.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13.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 33) 제정안 제8조(전문공보관) ①·② (생략)
- ③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그리고, 안 제7조제3항은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안 제7조제3항제1호가목), “다목³⁴⁾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 제7조제3항제2호라목)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보 과정에서 공개가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공보한 후에는 필연적으로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전문공보관이 어느 때에나 고소·고발을 당할 처지가 되는 문제가 있음.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는 벌칙조항에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기능³⁵⁾하기 때문에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4)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

35) 제정안 제15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전문공보관이 제7조에서 정한 공개 요건 또는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등의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안 제2장제3절(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라는 제목 하에, 전문공보관(안 제8조),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안 제9조) 및 예외적 구두 공개(안 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체계와 내용은 대체로 법무부훈령의 관련 규정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임.³⁶⁾

36) 법무부훈령 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지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여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등 업무도 담당한다) :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
- ② 전문공보관은 공보 대상인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공보의 방식)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 문자전송 등 공보자료 배포 외 방식 등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개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의 승인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취재요청 내용 등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간략히 서면으로 정리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한 공보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이하 "차장검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장검사 등이 공개하는 내용은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한정한다.

⑥ 제1항, 제5항에 의한 구두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 구두 공개 이후 그 범위 내의 질문이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별 언론에 구두 또는 문자전송 등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제16조(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 ①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 내용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허용된 공개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 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형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구두 또는 문자전송 등 공보자료 배포 외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정 안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8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각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업무 담당):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2.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관할 경찰서의 형사사건 공개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②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는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으며, 수사업무 종사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외적 구두 공개) ① 제9조에 따른 공보자료에 의해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의 배포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없이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전문공보관의 근무지 내 지정 장소에서 하며 문답 과정에서 제2절에서 정한 공개 요건과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제정안 제2장제3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먼저, **안 제8조**는 각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제1항), 형사사건의 공개는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제3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전문공보관 제도의 도입은 보다 정제된 공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전문공보관은 안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전문공보관의 자격 요건을 각 수사관서의 규모 및 인력수급 상황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검찰의 경우 부장검사 이상, 경찰의 경우 4급 이상,³⁷⁾ 공수처의 경우 수사처검사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각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할 필요³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대변인’ 직책이 존재함에도 전문공보관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인력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안 제8조제2항은 수사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기자가 일방적으로 전화하여 질의하는 경우 이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접촉’한 것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37) 경찰공무원의 계급과 관련하여 ‘4급 이상’이라는 표현도 아래 「경찰공무원법」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38) 『연이은 경찰 죽음에…경찰직협 "실적압박·인력부족이 원인"』, CBS노컷뉴스, 2024. 7. 29.;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이데일리, 2024. 5. 14. 등

(나) 다음으로, 공보 방식과 관련하여, **안 제9조**는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을, **안 제10조**는 예외적 구두 공개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바. 초상권 보호(안 제11조 및 제12조)

- (1) 안 제3장(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초상권 보호라는 제목 하에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안 제11조), 초상권 보호조치(안 제12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체계와 내용은 대체로 법무부훈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³⁹⁾

제 정 안
제3장 초상권 보호
제11조(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 수사업무 종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초상권 보호조치)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사기관 내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2. 수사기관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 (2) 제정안 제3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수사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 정보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수사기관의 장

39) 법무부훈령 제20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① 제2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초상권 보호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0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이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내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 및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11조의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는 별칙조항인 안 제15조제2항⁴⁰⁾의 전제가 되는 의무인바,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이라고 할 경우 ‘등’의 해석에 따라 처벌범위가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등’을 삭제하거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40) 제정안 제15조(벌칙) ②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안 제13조 및 제14조)

- (1) 안 제4장(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라는 제목 하에 수사업무 종사자 및 전문공보관에 대한 직무감찰(안 제13조)과 직무감찰 실시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안 제14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장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
제13조(직무감찰) ①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 피의사실등 또는 제11조의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정보가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직근 상급기관은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직무감찰을 실시한다.
②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각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직무감찰의 결과 제1항의 행위가 수사업무 종사자로부터 공표, 유포, 누설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수사업무 종사자를 수사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전문공보관이 제7조에서 정한 공개 가능한 요건 또는 피의사실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그 즉시 공보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사의뢰) 제13조의 직무감찰을 통하여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이 법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감찰을 실시한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 (2) 제정안 제4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피의사실이나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이 공표·유포·누설된 경우 수사업무 종사자가 속한 기관⁴¹⁾의 직근 상급기관(직근 상

41) 안 제13조 본문에서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직근 상급기관’이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업무 종사자가 속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전문공보관도 같음)이 수사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제1항), 전문공보관이 공개 가능한 요건 또는 범위를 벗어나 피의사실을 공개한 경우 전문공보관이 속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이 전문공보관에 대하여(제2항)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수사업무 또는 공보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4조**는 직무감찰을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전문공보관을 수사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과 예외적 공개에 관한 요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에 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피의사실공표금지 위반에 대한 의무적 감찰 실시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 등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7장⁴²⁾)를 범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사실공표나 예외적 공개 요건 등의 위반 혐의만 제기되면 직무감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업무 종사자와 전문공보관의 정상적인 수사 또는 공보 업무 수행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2)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무유기죄(제122조),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선거방해죄(제128조), 뇌물죄(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아. 벌칙(안 제5장)

(1) 안 제5장(안 제15조)은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전문공보관이 의 무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장 벌칙
제15조(벌칙) ①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피의 사실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전문공보관이 제7조에서 정한 공개 요건 또는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등의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제정안 제15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안 제15조제1항은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표·유포·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② 안 제15조제2항은 수사업무 종사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호송에 대한 정보 등을 공표·유포·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③ 안 제15조제3항은 전문공보관이 제7조의 예외적 공개 요건 또는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안 제15조제1항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제4조⁴³⁾를 위반한 피의사실등의 공표·유포·누설을 처벌하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향후 피의사실공표가 문제될 경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 이 법의 처벌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등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안 제3조제1항⁴⁴⁾이 규정한 이 법 우선 적용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15조제3항은 전문공보관의 제7조의 공개 요건 또는 범위를 위반한 피의사실등의 공개를 처벌하고 있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재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수사·공소업무에서 배제된 전문공보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안 제7조제3항제1호가목), “다목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 제7조제3항제2호가목) 등 처벌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표현이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전문공보관이 수사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청취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공보하였음에도 고소·고발을 당하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43) 제정안 제4조(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표, 유포, 누설은 피의사실등에 관한 일체의 사건관련 자료 또는 그 내용을 말 또는 글 등으로 수사업무 종사자 또는 제8조의 전문공보관 이외의 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4) 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위험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공보업무 수행에 소극적이거나 공보업무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법정형이 중한 것은 아닌지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종합의견

- (1) 제정안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과 예외적 공개의 요건·범위 등을 정하고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등의 명예·인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2) 다만, 제정안의 처벌 조항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의 관계 문제, 상세한 의무규정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게 함으로 인한 체계의 복잡성, 일부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전문공보관의 공보업무 수행이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 등에 대해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 요컨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논의는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형사정책적 고려,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056